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

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	------	----

신구조문 대비표 -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

<p>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p>	<p>본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이하 “약정”이라 함)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당행”이라 함)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요청 받은 포페이팅 거래에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한다. 개별 포페이팅거래의 신용장 내역은 본 약정의 첨부 1의 포페이팅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함)에 기술되는 바와 같다. 의뢰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의뢰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p> <p>1조 (2) 당행은 첨부 양식에 의한 의뢰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귀사의 포페이팅 거래 요청에 대하여 그 동의 여부, 해당 할인금리 및 수수료를 귀사에 통보한다.</p> <p>2조 인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귀사에, LIBOR 기타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당행이 정하여 제1조 제2항과 같이 통지한 이율로</p> <p>3조 (LIBOR) 이 약정에서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로이터 LIBO 페이지에 고시되어 모든 참조은행 (reference bank)이 인용하는 해당 기간의 금리를 의미한다. 해당 거래 통화에 대한 금리가 LIBO에 반영되지 않고 달리 특정된 바가 없는 경우, 당행은 당행의 자금 조달 비용 또는 제3자가 해당 통화로 해당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할 때에 발생하는</p>	<p>본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이하 “약정”이라 함)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당행”이라 함)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귀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요청 받은 포페이팅 거래에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한다. 개별 포페이팅거래의 신용장 내역은 매입의뢰서 (당행 소정의 양식, 이하 “의뢰서”라 함) 에 기술되는 바와 같다. 의뢰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의뢰서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p> <p>1조 (1) 당행은 의뢰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귀사의 포페이팅 거래 요청에 대하여 그 동의 여부, 해당 할인금리 및 수수료를 귀사에 통보한다.</p> <p>2조 인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당행이 정하여 제1조 제2항과 같이 귀사에 통지한 이율로</p> <p>(삭제)</p>	<p>포페이팅 의뢰서 첨부양식을 당행 소정의 양식인 매입의뢰서로 변경</p> <p>“첨부 양식” 삭제</p> <p>“LIBOR” 삭제</p> <p>LIBOR 조항 삭제</p>
---------------------	---	---	---

신구조문 대비표 -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

<p>비용을 LIBOR 대신 기본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금리가 '0' 보다 적은 경우 LIBOR 가 '0'인 것으로 간주한다. 귀사가 본 조항에 따라 할인금리를 결정하여 산정된 매수대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사는 본 약정에 따라 할인을 위해 당행에 의뢰서를 제출한 해당 포페이팅 거래 신청을, 당행의 대금지급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p> <p>4조~15조</p> <p>(첨부양식) 포페이팅 의뢰서 포페이팅 의뢰서</p> <p>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p> <p>당사와 귀행 사이에 체결된 포페이팅거래 기본약정서(체결 일자 :)에 따라, 당사는 비소구조건부 금융에 의한 포페이팅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 기재의 신용장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1a. 신용장 개설은행/신용장 번호</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1b. 신용장 확인은행 (해당될 경우)</td> <td></td> </tr> <tr> <td>2. 신용장 금액</td> <td></td> </tr> <tr> <td>3. 매입금액</td> <td></td> </tr> <tr> <td>4. 연지급 기간</td> <td></td> </tr> <tr> <td>5. 신용장 개설의뢰인</td> <td></td> </tr> </table>	1a. 신용장 개설은행/신용장 번호		1b. 신용장 확인은행 (해당될 경우)		2. 신용장 금액		3. 매입금액		4. 연지급 기간		5. 신용장 개설의뢰인		<p>5조~14조</p> <p>(삭제)</p>	<p>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항 번호 변경</p> <p>포페이팅 의뢰서 첨부양식을 당행 소정의 양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삭제</p>
1a. 신용장 개설은행/신용장 번호														
1b. 신용장 확인은행 (해당될 경우)														
2. 신용장 금액														
3. 매입금액														
4. 연지급 기간														
5. 신용장 개설의뢰인														

신구조문 대비표 - 지급보증거래 기본약정서

	<p>당사는 귀행이 본 의뢰서 및 위 신용장과 기타 관련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귀행의 포페이팅 거래 동의 여부, 해당 할인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당사는 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인수어음을 수령하거나 인수통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포페이팅이 유효하게 됨을 확인합니다.</p> <p>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행이 인수어음의 수령 또는 인수통지를 받기 전에 당사가 귀행에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승낙 여부는 귀행의 재량에 의합니다. 귀행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들 은행으로부터 어음인수 또는 인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귀행이 당사에 소구권을 보유하며, 귀행이 인수어음의 수령 및 인수통지를 받는 즉시 귀행의 소구권은 소멸합니다.</p> <p>당사는 위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매수인과 당사의 계약 조건에 따른 물품, 목적, 명세 등에 맞게 상품 선적을 이행하였으며 매도인 또는 신용자 수익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당사는 위 신용장과 관련하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의해 인수된(인수되는) 어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귀행에 무조건, 취소불능으로 양도합니다. 위 신용장이 어음 없는 연지급 신용장인 경우 당사는 위 신용장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본 의뢰서를 통하여 귀행에 양도합니다.</p> <p>날짜 : (권한자 서명)</p>		
--	--	--	--